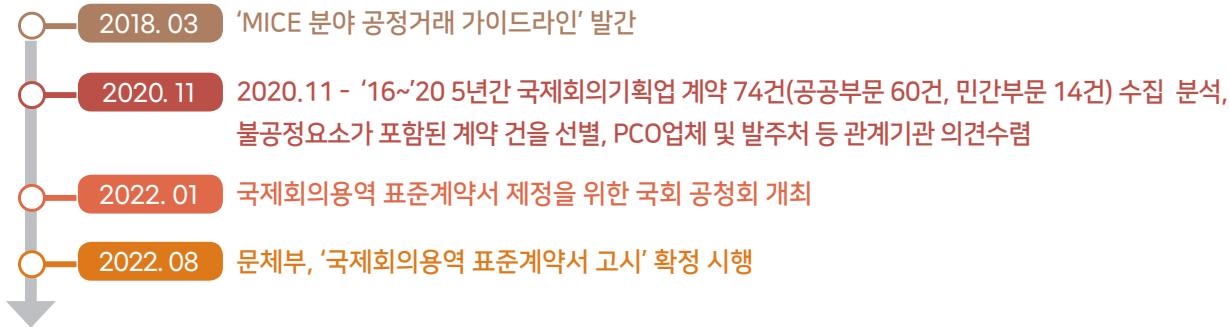


8월 8일부터 「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」 시행

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MICE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합니다.

추진 과정



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

표준계약서 주요내용

불공정 계약 요소

- 1 대가 없는 과업수행 요구
- 2 '총액확정계약'에서 부당한 사후정산 요구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, 법정 일반관리비 이윤 미준수
- 3 부당한 투입인력 교체 요구
- 4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보상
- 5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 지연 등

제4조의2. 계약의 내용 및 기간

- 분리발주 된 과업과 관련된 수행내용은 당해 계약의 과업내용으로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

제6조. 계약금액 확정

- 계약방법을 '총액확정계약'으로 규정
-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이윤율 10%, 일반관리비율 8% 준수
- 지출항목에 대해 협찬,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 부담 요구 등 부당특약 소지 방지

제8조. 인력의 투입 및 교체, 업무감독

- 관련된 노동 및 근로 관계 법령 명시
- 부당한 인력파견 요구 금지 명시

제12조. 과업내용의 추가, 변경 및 해석 등

-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 반드시 계약당사자 간 사전 협의하고, 이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

제18조.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관리 명확화

- 코로나19 등 불가항력 사유 명시, 이로 인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

제20조. '총액확정계약'에서의 사후정산

- 확정된 계약금액 전부에 대해 사후정산을 할 수 없도록 규정
- 표준계약서에서 고시된 정산 사유 발생 시 원가검토 등 관련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

제22조.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

-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 명시(15일 이내) 및 대금지급 내역 교차 확인